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광역시 · 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84호)

2025. 9.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광역시·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3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6일 광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증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의 일상화 추세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국가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40% 감축)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실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주도 및 재원확보 체계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

임.

따라서 국가의 기후대응기금 일부가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기후대응 정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금의 용도에 “광역시·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0호 신설).

III. 검토의견

1. 광역시·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광역시·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0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9. (생략) <u><신설></u> <u>10. · 11.</u> (생략)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9. (현행과 같음) <u>10. 제6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u> <u>11. · 12.</u>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5년 501억 4,700만원 규모, 경기도는 2025년 102억 500만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지역기후대응기금 운용 현황 예시]

지자체	조례명	규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4년: 786억 9,100만원 ○ '25년: 501억 4,700만원
경기도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4년: 240억 8,500만원 ○ '25년: 102억 500만원

자료: 환경부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²⁾는 70.9%로 전년 대비 3.2%p 감소하였는데,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기반이 열악하여 재정자주도가 낮고 지속적인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어 지역기후대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총 재원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임.

$$\text{재정자주도}(\%) = \frac{\text{자주재원}}{\text{일반회계 총재원}} \times 100$$

응기금 조성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의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기후대응기금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주도]

(단위: %)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개요」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2025년 63억원), 탄소중립 그린도시(2025년 18억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2025년 160억원) 등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다만,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점,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 등으로 자체 수입 기반이 부족³⁾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여력이 없는 상황인 점, 재정분권화 원칙상 지역기금의 재원은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조달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3

3)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 결과 자체수입인 배출권매각대금은 전체 수입 2조 3,058억원 중 8.1%인 1,877억원로 나타났음.

4) 재정분권화 원칙에 비추어볼 때 지역 기금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직접적 이전보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지방이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부세는 지방간 재정격차를 보전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기능함.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지역 기금의 재원은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조성함으로써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